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57
----------	-------

발의연월일 : 2025. 11. 3.

발 의 자 : 조인철 · 이정현 · 정준호
문진석 · 안도걸 · 박균택
어기구 · 한정애 · 서삼석
장종태 · 허성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음.

최근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기존 성향을 강화하여 확증편향과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콘텐츠의 삭제·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알고리즘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 사항을 신고·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자

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15호 및 제44조의11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알고리즘”이란 어떠한 문제의 해결 또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정보를 기초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연산·논리·규칙 및 과정을 말한다.

15.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란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정보 등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정보, 재화, 서비스 등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추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1(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에 사용되는 주요 기준의 종류 및 그 적

용 방식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할 것

2.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에 관한 이용자의 불만을 전자적으로 접수·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

3.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가 이용자의 권익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시스템적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완화조치를 마련할 것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에 대한 이행 현황 및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1항에 제5호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절차 또는 완화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44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① ----- -----. 1. ~ 13. (현행과 같음) 14. <u>“알고리즘”이란 어떠한 문제의 해결 또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정보를 기초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연산·논리·규칙 및 과정을 말한다.</u> 15. <u>“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란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 등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정보, 재화, 서비스 등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추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u>
②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의11(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등) ①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u>

해당하는 자는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에 사용되는 주요 기준의 종류 및 그 적용 방식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할 것

2.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에 관한 이용자의 불만을 전자적으로 접수·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

3.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가 이용자의 권익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시스템적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완화조치를 마련할 것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에 대한 이행 현황 및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6. ~ 12. (생략) ② ~ ④ (생략)	<u>제2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76조(과태료) ①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절차 또는 완화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u> 5의2. <u>제44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 6.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